

#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99-40
----------	--------

제출일자 : 1999. 8. 13.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제정이유

- 거창군내 개인묘지 설치로 인한 국토 잠식을 억제하기위해 마을공동묘지중 읍면당 1개소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로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한 거창군공설묘지를 설치.
- 공설묘지는 공설공원묘지와 공설일반묘지 설치에 관한 사항.
- 묘지내 장묘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장묘시설의 사용기간을 정하여 사용기간연장과 사용권 소멸에 관한 사항.
- 분묘의 설치 형태 및 구조 등에 관한 사항.
- 장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정근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 지방자치법 제15조

#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매장묘지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묘시설”이라 함은 공설공원묘지, 공설일반묘지등 시체를 장사하는 모든시설을 말한다.
2. “공설공원묘지”라 함은 개선된 분묘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구역을 정비한 묘지를 말한다.
3. “공설일반묘지”라 함은 과거에 설치한 공동묘지 형태의 단지조성을 하지 않은 구역의 묘지를 말한다.
4. “납골묘지”라 함은 공설공원묘지내에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사용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조성한 묘지를 말한다.

제3조(묘지의 구분) 공설묘지는 공설공원묘지와 공설일반묘지로 구분한다.

제4조(명칭과 위치) 장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사용허가등) ①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장묘시설 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묘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묘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읍면을 제외한 타지역 거주자가 사망하여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미성년자 사산아 및 개장유골을 묘지에 매장 또는 수장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사용면적) 분묘 1기당 공설묘지 사용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묘지: 9제곱미터 이내.
2. 납골묘지: 20제곱미터 이내.

제7조(사용료 등) ① 장묘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2와 같다. 단, 공설공원묘지 분묘 관리비는 매3년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은 거창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여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 별표2의 묘지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유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유족
4. 군수가 정한 지역에 거주자가 사망하여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제9조(사용기간) ① 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연장허가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행려사망자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묘지의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0조(사용권의 소멸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1. 장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묘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 제2항에 의한 사용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2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2조(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 규정에 의한 관리비를 2회 연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수거 및 개장명령) 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된 경우에는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개장한 후 납골묘지에 안치하거나 합동 매장할 수 있다.

③ 제1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개장시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장묘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5조(분묘의 설치기준등) ① 분묘는 군수가 정한 형태 및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묘지에는 군수가 정한 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납골묘지내 납골시설 및 비석은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시설 및 규격으로 설치하여야한다.

제16조(분묘의 관리책임) 공설묘지내 분묘의 관리책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설공원묘지: 군수.
2. 공설일반묘지: 사용자.

제17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군수는 사용자가 장묘시설내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탁) 군수는 장묘시설의 관리운영 (이하“운영”이라 한다)을 마을개발 위원회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지원) 군수는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 등은 위탁받은 장묘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권한위임) 군수는 공설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 위임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장묘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 일반공설묘지내의 분묘는 이 조례 시행이후 법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정한 일제신고기간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사용면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에 사용중인 묘지의 사용면적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사용한 면적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전에 사용중인 장묘시설의 관리비는 이 조례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 장묘시설의 명칭등

### 1. 공설공원묘지

명 칭	위 치	면 적 (m <sup>2</sup> )
북 상 공설공원묘지	월성리 산150, 산151-10, 산151-11	13,075

### 2. 공설일반묘지

명 칭	위 치	면 적 (m <sup>2</sup> )
거 창 공설일반묘지	가지리 산 170	11,008
주 상 공설일반묘지	성기리 산 37	6,545
응 양 공설일반묘지	죽림리 산 108	11,379
고 제 공설일반묘지	봉산리 1309	15,455
북 상 공설일반묘지	갈계리 산 39	9,540
위 천 공설일반묘지	남산리 산 41	4,959
남 상 공설일반묘지	무촌리 산 253	16,760
남 하 공설일반묘지	무릉리 산 266	5,296
신 원 공설일반묘지	중유리 산 249	4,615
가 조 공설일반묘지	일부리 산 5	10,678
가 북 공설일반묘지	용암리 산 125	10,512

(별표2)

###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구 분	사용면적	요 금 (원)		비 고
		묘지사용료	관 리 비	
공 설 공 원 묘 지	1제곱미터당	9,000	4,000	
공 설 일 반 묘 지	1제곱미터당	2,000		